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제23조 제4항 관련)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심 의 명	2023년 2회 건축위원회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심의일자	2023.1.17.~ 1.18.(서면심의)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최광백		
대지현황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지번	1092-2번지	관련지번
	대지면적	281 m ²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66.13 m ²	건폐율 59.12 %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m	용적률 234.46 % 연면적 합계 847.6 m ²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설비환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및 3층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배치 평면도가 미흡(계통도상의 배관도, 평면도 상의 배관도, 배관 관경 등)하므로 보완 필요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내역서의 산출근거 등이 미흡하므로 보완 필요 	
(토질기초)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필로티) 반자를 불연성 재료로 교체하는 것은 차량 화재로 인한 화염의 빠른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나,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로 구성되어 있어 차량 화재시 화염이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확산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1층 상층부부터 2층 저층부의 외벽 또한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해야만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알류미늄과 같은 DMC마감재를 사용하더라도 필로티 주변부 가연물질을 최소화시켜 화재시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건축물 준공 또는 리모델링 당시의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가벽 설치, 마감재 교체 등)로 인하여 살수 장애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